

(參照)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

1992年11月
운영위원회

監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1993년도 예산심의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監査 期間

1992. 11. 30. (월) [1일간]

監査實施對象機關

○ 마포구 의회사무국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

監査要領

감사는 의회사무국의 1991. 12. 1. 이후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보고 및 질문 서류제출요구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行政事項

-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감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 첨 부 : 1.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서 1부. 끝.

구 분	감 사 위 원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사무직원
운 영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중 만 (간 사) 권 오 범 (위 원) 구 우 석, 김 중 열, 손 용 호, 이 강 필, 이 봉 형, 정 연 우, 조 회 태, 채 운 석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실	

監査日程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준 비 단 계	'92. 11. 25. 11. 26. 11. 27. 11. 28.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 감사계획(안)작성, 채택 * 감사계획(안)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 통보 * 서류제출,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 * 감사관계 자료 수합 * 감사자료 검토, 문제점 파악	
실 시 단 계	'92. 11. 30.	* 위원장의 감사선언 * 사무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업무보고 * 사무감사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감 사 리 결 단 과 계	'92. 12. 3. ~ 12. 21. '92. 12. 22. 12. 24.	*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감사 결과 보고(본회의) *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案)

1992年11月
총무재무위원회

監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1993년도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監査 期間

1992. 11. 30.(월)— 1992. 12. 2(수)
[3일간]

監査 實施 對象 機關

- 마포구청(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 동사무소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

구 분	감 사 위 원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사무직원
총무재무 위원회	(위 원 장) 심 재 창 (간 사) 윤 동 현 (위 원) 김 성 환, 김 유 현, 박 주 서, 유 남 렬, 윤 정 용, 이 강 필, 조 회 태	문화공보실, 감 사 실, 시민봉사실, 총 무 국, 재 무 국, 동사무소	총무재무 위원회실 및 현장	윤 재 명

監 査 日 程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준 비 단 계	'92. 11. 25. 11. 26. 11. 27. 11. 28.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 감사계획서 수립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 통보 * 서류제출,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 * 감사관계 자료 수합 * 감사자료 검토, 문제점 파악	
실 시 단 계	'93. 11. 30. '92. 12. 1. '92. 12. 2.	* 위원장의 감사선언 *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 국별 업무보고 * 실과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 국지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 동사무소 현지 출장,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 * 감사결과 강명 및 감사종료 선언	
감 사 결 과 과 계	'92. 12. 3. ~ 12. 21. '92. 12. 22. 12. 24.	*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보고서 채택 * 감사 결과 보고(본회의) *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監 査 要 領

감사는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의 각과, 재무국의 각과 및 동사무소를 실과동별로 1991. 12. 1. 이후의 구행정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및 질문, 서류제출요구와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行 政 事 項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첨 부 : 1.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서 1부.

2. 서류제출요구목록 1부. 끝.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

1992年11月
시민보건위원회

監 査 的 目 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1993년도 예산심의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監 査 期 間

1992. 11. 30.(월)—1992. 12. 2.(수) [3일간]

監 査 實 施 對 象 機 關

- 마포구청(시민국, 보건소)
- 동사무소

監 査 委 員 會 編 成 及 監 査 場 所

구 분	감 사 위 원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사 무 직 원
시민보건 위원회	(위 원 장) 구 우 석 (간 사) 홍 성 환 (위 원) 김 상 열, 송 운 석, 이 봉 형, 이 종 일, 정 연 우, 홍 길 표, 황 태 식	시 민 국, 보 건 소	시민보건 위원회실	이 경 용

監 査 日 程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준 비 단 계	'92. 11. 25. 11. 26. 11. 27. 11. 28.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 감사관계 자료 수합 *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계획 통보 * 서류제출, 증인 출석요구서 이송 * 감사자료 검토, 문제점 파악	
실 시 단 계	'92. 11. 30. '92. 12. 1. '92. 12. 2.	* 위원장의 감사선언 * 국, 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 국, 소별 업무보고 *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사무감사 -위생과, 산업과 사무감사 -동사무소 현지출장 -청소과, 보건소 사무감사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감 사 결 과 과 계	'92. 12. 3. ~ 12. 21. '92. 12. 22. 12. 24.	*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보고서 채택 * 감사 결과 보고(본회의) *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監 査 要 領

감사는 시민국의 각과, 보건소를 1991. 12. 1. 이후의 구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및 질문, 서류제출요구와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行 政 事 項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計劃

1992年11月
도시건설위원회

監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 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3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監査의 期間

1992. 11. 30.(월)-1992. 12. 2.(수)
[3일간]

監査實施對象機關

- 마포구청(도시정비국, 건설국)
- 동사무소

監査委員會 編成 및 監査場所

구 분	감 사 위 원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사 무 직 원
도시건설 위원회	(위 원 장) 한 현 덕 (간 사) 전 병 만 (위 원) 권 오 범, 김 동 휘, 김 문 태, 김 중 열, 손 용 호, 윤 명 규, 이 인 구, 이 중 만, 이 천 규, 채 운 석	도시정비국, 건설국	도시건설 위원회실	신 승 관

監査要領

감사는 도시정비국의 각과별, 건설국의 각과별로 1991. 12. 1. 이후의 구행정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및 질문, 서류제출요구와 현지 확인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行政事項

- 가.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 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監 査 日 程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준 비 단 계	'92. 11. 25.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11. 26.	* 감사관계 자료 수합	
	11. 27.	* 감사계획서 수립, 채택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11. 28.	* 감사계획 통보 * 서류제출, 증인 출석요구서 이송 * 감사자료 검토, 문제점 파악	
실 시 단 계	'92. 11. 30.	* 위원장의 감사선언 *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 국별 업무보고 * 행정사무감사 실시 -건축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현지확인	
	'92. 12. 1.	-건축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건설관리과 사무감사	
	'92. 12. 2.	-건축과 현지확인 -건축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현지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감 사 결 과 계	'92. 12. 3. ~ 12. 21.	*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92. 12. 22.	* 감사보고서 채택	
	12. 24.	* 감사 결과 보고(본회의) *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92. 11. 2.
발 의 자: 채운석 의원
외 7인

○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1년도 결산 및 91년도 예비비의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 : 15인
- 선임방법 :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1조
- 지방재정법 제41조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목 적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1년도 결산 및 91년도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위 원 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5인으로 한다.
3. 선임방법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19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992. 11. 26.
충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2. 11. 20.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2. 11. 20.
 - 다. 상정일자 : 제13회 정기회 제1차위원회('92.11.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영목 재무과장)
 - 가. 제안이유
재산취득 및 매각에 대한 당초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취득 : 연남동 365-11 박창열의 매도 포기로 연남동 370-6 김덕호로 변경 취득.

○ 매각 : 신수동 445-24, 현석동 106-9, 신수동 445-26, 현석동 106-11, 신공덕동 145-16을 점유자의 매수신청에 의거 변경.

3.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현기)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연남동 370-6 김덕호 소유물건은 연남동 제2노인정으로 사용키 위한 재산취득으로 비용은 금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지난 9월 22일 제11회 임시회시 연남동 365-11 소재 물건을 취득하도록 승인 한바 있음. 그러나 소유권자 박창열씨의 매도의사 철회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대체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신수동 445-24소재 물건동 매각 5건은 점유자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서, 동매각건은 현지확인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익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후 매각결정이 이루어져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반면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입예산 확보 측면에서는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신수동 445-5 현대아파트와 현석동 114-1 원화출판사 사이의 소방도로 중 가각이 급격한 부분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주민이 원하는 내용대로 가각정리를 하여, 빠른시일내에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

6. 소수의견의 요지 : 매각건중 신수동 및 현